

식품자판기 위생교육, 대폭 완화

- 신규 영업자만 1회만 받도록 개정
- 기존 영업자는 위생교육 면제



금년 8월 6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식품자판기 관련 위생교육이 대폭 간소화되게 된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가운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제외되어, 8월 7일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위생교육은 기존 자판기 운영자는 받지 않아도 되며, 신규 영업자의 경우만 1회만 받으면 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를 대상으로 줄기차게 '자판기 분야 위생교육 완화'를 요청·건의한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동안 자판기 운영에 애로점으로 작용하던 과중한 위생교육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자판기 운영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되리라 본다.

한 OP업체 사장은 "위생교육은 자판기 운영업을 하는 전문업체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데 매년 받아야 해서 골치가 아팠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 운영자들이 위생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 무척 기쁘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개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판기 판매에 있어 과중한 위생교육 문제는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면서 "앞으로 자판기를 신규구입해 운영하는 개인운영자들이 단 한번만 위생교육을 받으면 돼 판매시장 확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렇듯 자판기 산업계는 이번 위생교육 완화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자판기 위생교육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무용론이 드세지는 상황에서, 그것도 과도한 교육 주기를 적용 받아야 하는 문제는 진작 개선이 되었어야 할 사항이었다. 지금이나마 보건복지부가 자판기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생교육 완화를 진행한 일은 정말 잘한 일이다. 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의 특성상 위생교육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그 의무를 최소화하여 운

영자의 부담을 완화 시켜준 것은 정말 국민의 편에선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위생교육 완화 조치로 한국휴게실업중앙회의 위생교육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판기 신규수요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는 각 시·도 또는 시·군·구 및 위생교육기관에 위생교육 개정에 다른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변경 시행되는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제 산업계는 변경된 위생교육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관련되는 고객과 업체들에게 이 사실이 주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판기 위생교육 완화가 극도로 부진한 판매시장을 살리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 개정 법률 요약

- 자판기 위생교육 매년 받도록 되어있던 얼마 전까지의 규정이
- ⇒ 신규 영업자만 1회만 받도록 개정
- ⇒ 기존 영업자는 위생교육 면제